

「2023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개정(안) 신규대조표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1장 총론			
5	<p>1. (운영 근거)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 2013-7호, 제2015-74호)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p>	<p>1. (운영 근거)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고시 제2013-7호(2013.12.18.)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2020년 2월 29일로 폐지됨
5	<p>4. (방과후학교 편성·운영 원칙) ⑤ 단위학교는 학생의 건강권·휴식권·안전 등을 위해 정규 수업 이전(0교시) 또는 늦은 시간(22:00 이후)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도록 한다. 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 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 적용) - 전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방학)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학기 중 휴업일에 편성·운영하는 경우 * 동법 시행령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운영할 수 있음(동법 제16조 4호 적용의 배제)</p>	<p>4. (방과후학교 편성·운영 원칙) ⑤ 단위학교는 학생의 건강권·휴식권·안전 등을 위해 정규 수업 이전(0교시) 또는 늦은 시간(22:00 이후)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도록 한다. ⑥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⑦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 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 적용) - 전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방학)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학기 중 휴업일에 편성·운영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운영할 수 있음(같은 법 제16조 4호 적용의 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라잡이의 방과후학교 편성·운영 원칙과 일치 필요함 (가이드라인에 빠져있음) ■ ‘별도’ 문구 삭제. 별도 계획이 아닌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함 ■ 용어를 순화함
6	<p>나. 비전과 목적 방과후학교는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 융합형 인재육성에 기여</p>	<p>나. 비전과 목적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방향을 반영한 비전과 목적, 목표 수정 ■ 교육부 고시 제2013-7호(2013.12.18.)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2020년 2월 29일로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다. 목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 -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학교 실현</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p> </div> <p>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 으로 한다.</p>	<p>다. 목표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활성화 /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 제공 -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체제 강화 - 국정과제 연계</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p> </div> <p>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 으로 한다.</p>	<p>폐지됨</p>
7	<p>바. 방과후학교 편성·운영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별도 계획을 수립·운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됨.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 적용, 동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 전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방학)중 편성·운영 되는 경우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학기 중 및 휴업일에 편성·운영하는 경우 <p>*동법 제8조제②항의 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운영할 수 있음(동법 시행령 제16조 4호 적용의 배제) 	<p>바. 방과후학교 편성·운영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대비 별도 계획을 수립·운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됨.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 적용, 같은 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 전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방학)중 편성·운영 되는 경우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학기 중 및 휴업일에 편성·운영하는 경우 <p>*같은 법 제8조제②항의 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운영할 수 있음(같은 법 제16조 4호 적용의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문구 삭제. 별도 계획이 아닌,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함 ■ 용어를 순화함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7	<p>「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p>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26.></p>	<p>「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p>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제17조(적용의 배제) 2018년 2월 28일 효력 종료
8	<p>「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p>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개정 2020. 10. 20.></p> <p>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5.29.></p> <p>④ 「학원의~」~<개정 2016.5.29.></p>	<p>「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p> <p>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개정 2020. 10. 20.></p> <p>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5.29.></p> <p>④ 「학원의~」~<개정 2016.5.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안 적용
9	2. 방과후학교 운영 비전 및 목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쪽 내용과 동일
10	<p>3. 방과후학교 운영 추진체계</p> <p>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p>	<p>3. 방과후학교 운영 추진체계</p> <p>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부서명 삭제
2장. 방과후학교 운영			
13	가. 방과후학교 업무처리 흐름도	가. 방과후학교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5]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개인위탁용), ■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 재난 시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나 방법에 대해 연간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문구를 포함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66] 첨부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단계	주요 내용	시기	단계	주요 내용	시기	
	준비	①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 조사(학생, 학부모), 업체위탁 운영 여부 조사(필요시)[서식1] ② 방과후학교 (연간)운영 계획 수립(학교의 장)[서식4] - 프로그램 편성계획(개설 예정 프로그램명, 운영 예정횟수 등) - 강사 선발 계획(자격기준, 선정방법, 심사기준, 재계약 기준 등) - 홍보 계획 및 평가 계획 - 학생 관리 계획 등 - 교재 및 재료 선정 계획 - 회계 관리 등	12월 ~ 12월 ~	준비	①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 조사(학생, 학부모), 업체위탁 운영 여부 조사(필요시)[서식1] ② 방과후학교 (연간)운영 계획 수립(학교의 장)[서식5] - 프로그램 편성계획(개설 예정 프로그램명, 운영 예정횟수 등) - 강사 선발 계획(자격기준, 선정방법, 심사기준, 재계약 기준 등) - 홍보 계획 및 평가 계획 - 학생 관리 계획 등 - 교재 및 재료 선정 계획 - 회계 관리 등 ※ 사회재난이나 자연 재난 대비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 등에 관한 계획 등	12월 ~ 12월 ~	
	선정·계약	⑥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 및 성범좌아 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서식31~32]	..	선정·계약	⑥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 및 성범좌아 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서식31~32] [서식66]	..	
14	나. 업체위탁 업무 처리 흐름도			나. 업체위탁 업무 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안 반영(교사 제외) ■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 재난 시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나 방법에 대해 연간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문구를 포함함 ■ 평가시 평가위원회 외부위원이 50%이상 참석해야 함을 분명히 함
	준비	①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 조사(학생, 학부모, 교사)[서식1] ② 방과후학교 (연간)운영 계획 수립	11월~ 12월~	준비	①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 조사(학생, 학부모, 교사)[서식1] - 전부 또는 일부 업체위탁 여부 포함(필요시) ② 방과후학교 (연간)운영 계획 수립 준비 - 사회재난이나 자연 재난 대비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 등에 관한 계획 등	11월 ~ 12월~	
	검토·심의	③ 방과후학교(연간) 운영계획 심의·자문 - ④ 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 ⑤ 위탁업체의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외부위원 참여 비율 50% 이상)	12월~ 2월	선정·계약	⑤ 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 ⑥ 위탁업체의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외부위원 참여 비율 50% 이상) ※ 제안서 평가시 외부위원 참석 비율 50% 이상 ⑦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학교의 장)[서식52]	12월~ 2월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16	<p>○ 해당교 직원 및 비교과 교사(행정실 직원, 보건 교사, 영양 교사, 전문상담교사 등)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할 수 있다.</p> <p>5. (운영 시간)</p> <p>② 방과후학교는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 안전지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단위학교는 학생의 건강권과 휴식권,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 이전(0교시)과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도록 한다.</p>	<p>○ 해당교 직원(행정실 직원 등) 및 비교과 교사(행정실 직원, 보건교사, 영양 교사, 전문상담교사 등)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할 수 있다.</p> <p>5. (운영 시간)</p> <p>② 방과후학교는 토요일, 휴업일,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 안전지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단위학교는 학생의 건강권과 휴식권,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 이전(0교시)과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및 비교과 교사 예시를 구분함 ■ 방과후학교는 토요일, 휴업일, 방학 중에도 가능하다는 교육부 안 반영 ■ 동의어 삭제함
17	<p>7. 활동내용 관리</p> <p>「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단위 학교는 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결과를 기재하지 않는다.</p>	<p>7. 활동내용 관리</p> <p>「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단위 학교는 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결과를 기재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화함
19~20	<p>나. 운영 방침</p>	<p>나. 운영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는 운영 기간 단위로 강사, 프로그램별로 작성 ● 단위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현직 교원,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용 ● 단위학교는 정규 수업 운영과 개인의 건강권·휴식권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외부강사 모집이 어려운 경우 등)에만 소속 교사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이드라인의 운영방침 (15~16쪽 ②,⑧,⑨,⑫번) 길라잡이에 빠져있음 ■ 가이드라인과 길라잡이 내용 일관성 유지함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놀이활동 중심, 음성언어 중심으로 적절한 시수를 운영 	
20	<p>다.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 수립 : 프로그램 편성 계획</p> <p>□ (연간)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p> <p>○ 회계 관리 등</p>	<p>다.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 수립 : 프로그램 편성 계획</p> <p>□ (연간)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p> <p>※ 사회재난이나 자연 재난 대비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 등에 관한 계획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 재난 시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나 방법에 대해 연간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문구를 포함함
23~24	<p>바. 운영 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는 방학 중에도 운영 가능 ☉ 단위학교는 학생의 건강이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정규수업 이전(0교시) 또는 늦은 시간(10시 이후)까지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p>사. 교재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교재를 사용할 때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거 신고 된 출판사의 도서를 사용해야 함 - 간행물의 정가 및 국제표준자료번호 표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시행 2020.3.4.) (법률 제16693호, 2019.12.3., 일부개정) 제7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2항,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1항에 따라야 함 	<p>바. 운영 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는 토요일, 휴업일, 방학 중에도 운영 가능 ☉ 단위학교는 학생의 건강이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정규수업 이전(0교시) 또는 늦은 시간(10시 이후)까지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p>사. 교재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교재를 사용할 때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출판법)」에 따라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ISBN이 기재된 도서와 출판사 검색시스템에 등록된 출판사 발행 도서(http://book.mcst.go.kr)에 모두 등록된 도서를 사용 - 간행물의 정가 및 국제표준자료번호 표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시행 2020.3.4.) (법률 제16693호, 2019.12.3., 일부개정) 제7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제2항,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제1항에 따라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시간 명확화함 ■ 동의어 삭제함 ■ 관련 법령을 현행화함 ■ 출판사 등록 도서 검증 내용(보완) 및 사이트 안내
24	<p>아. 활동내용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p>아. 활동내용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화함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단위학교는 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결과를 기재하지 않음	단위학교는 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결과를 기재하지 않음	
27	자. 학생 관리 및 안전지도 차. 방과후학교 정보 공시(학교알리미) 사항	자. 학생 관리 및 안전지도 차. 학교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수익자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함 ● 학교운영위원회는 업체위탁 시 방과후학교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과후학교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자문)시 방과후학교소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청문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이드라인(18쪽)의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용을 길라잡이에 반영함 ■ 차. 학교운영위원회 내용 추가함
27	차. 방과후학교 정보 공시(학교알리미) 사항 1) 공시기관 : 초, 중, 고, 특수학교 2) 자료기준일 ①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2022학년도 ②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2022학년도(2022.4.30.) ③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2021학년도 3) 공시시기 : 4월 4) 공시내용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①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운영 방침, 절차, 일정 등을 포함한 2022학년도 (연간)운영계획서 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022년 4월 30일 기준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 및 프로그램별 수강학생 수 ⑥ 수강학생수: 해당 강좌를 듣는 학생 수 (한명이 여러 강좌를 들을 경우 중복하여 입력됨) ⑦ 수익자부담액: 2021학년도 결산서 상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비용 총액 ⑧ 수익자부담외금액: 2021학년도 교육부 또는 교육(지원)청 지원 예산, 학교 자체 편성 예산, 지방자치단체·기업·지역사회기관 지원 예산 등	카. 방과후학교 정보 공시(학교알리미) 사항 1) 공시기관 : 초, 중, 고, 특수학교 2) 자료기준일 ①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2023학년도 ②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2023학년도(2023.4.30.) ③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2022학년도 3) 공시시기 : 5월 4) 공시내용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①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운영 방침, 절차, 일정 등을 포함한 2023학년도 (연간)운영계획서 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 및 프로그램별 수강학생 수 ⑥ 수강학생수: 해당 강좌를 듣는 학생 수 (한명이 여러 강좌를 들을 경우 중복하여 입력됨) ⑦ 수익자부담액: 2022학년도 결산서 상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비용 총액 ⑧ 수익자부담외금액: 2022학년도 교육부 또는 교육(지원)청 지원 예산, 학교 자체 편성 예산, 지방자치단체·기업·지역사회기관 지원 예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화함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해 사용된 금액(수강료, 강사료, 급·간식 지원비, 기타 운영비 등)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시설비 제외)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해 사용된 금액(수강료, 강사료, 급·간식 지원비, 기타 운영비 등)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시설비 제외)	
28-29	<p>1. 강사 선정 및 계약체결</p> <p>○ 개인위탁 강사 선정을 위한 면접 시 외부위원 (학부모, 지역사회전문가)이 50% 이상 참여 하도록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함</p> <p>② 외부강사 계약 시 신체검사서의 유효 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p> <p>※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서식의 병력 요건이 첨부된 건강진단서로도 대체 가능</p> <p>④ 개인위탁 외부강사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를 제출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 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를 실시하고,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한다.</p> <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참고</p> <p>※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참고</p>	<p>1. 강사 선정 및 계약체결</p> <p>○ 개인위탁 강사 선정을 위한 면접 시 외부위원 (학부모, 지역사회전문가)이 50% 이상 참석 하도록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함</p> <p>② 외부강사 계약 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국민건강검진결과서),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p> <p>④ 개인위탁 외부강사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를 제출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 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를 실시하고,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한다.</p> <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참고</p> <p>※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를 참석으로 구체화함 ■ ‘건강검진대체통보서’ 를 추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하나, 채용 신체검사서 범위에 들어가므로 삭제, 건강검진대체통보서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 결과서 추가 제출이 필요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를 추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이용 사무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사전동의 없이 이용가능한 사무이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관련 법령을 현행화함
31	가. 개인위탁 업무처리 흐름도	가. 개인위탁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 재난 시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나 방법에 대해 연간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문구를 포함함 ■ 참여를 참석으로 구체화함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단계	주요 내용	시기	단계	주요 내용	시기	
	준비	①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 조사(학생, 학부모) ② 방과후학교 (연간)운영 계획 수립(학교의 장) - 강사 선정 계획(자격기준, 선정 방법, 심사기준, 재계약 기준 등)	12 월 ~ 12 월 ~	준비	①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 조사(학생, 학부모) ② 방과후학교 (연간)운영 계획 수립(학교의 장) - 강사 선정 계획(자격기준, 선정 방법, 심사기준, 재계약 기준 등) ※ 사회재난이나 자연 재난 대비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 등에 관한 계획 등	12 월 ~ 12 월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위탁 강사 선정을 위한 면접 시 외부위원(학부모, 지역 사회전문가)이 반드시 50%이상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위탁 강사 선정을 위한 면접 시 외부위원(학부모, 지역 사회전문가)이 반드시 50%이상 참석 할 수 있도록 한다.			
32	라. 강사 자격 1) 내국인 강사 자격(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input type="checkbox"/> 당해 학교 및 타교에 재직 중인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 유의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자격취득자 계약시 (방과후학교 위탁 강사선정 포함)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를 통해 해당자격의 등록 여부 확인 필요			라. 강사 자격 1) 내국인 강사 자격(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input type="checkbox"/> 당해 학교 및 타교에 재직 중인 교원 (기간제교사 등 포함) - 유의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자격취득자 계약시 (방과후학교 위탁 강사선정 포함)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를 통해 해당자격의 등록 여부를 서류심사 전 조회 및 확인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약직 교사 등을 포함하기 위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자격 확인 시점을 구체화함
34	라. 강사 자격 2) 원어민 강사 자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제5항 까지 해당하는 자 - 별표1 중 5.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라. 강사 자격 2) 원어민 강사 자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 자격) 제1항에서 제6항까지 해당하는 사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련 법령을 현행화함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선원취업(E-10)까지 및 29.방문취업(H-2)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라목·바목 또는 사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자 -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p>○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고 방과후학교 원어민강사로 활동 가능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타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라목·바목 또는 사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p>○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에 의거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를 받고 방과후학교 원어민강사로 활동 가능한 사람</p>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35	<p style="text-align: center;">출입국관리법</p> <p>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6.3.29., 2018.3.20.></p>	<p style="text-align: center;">출입국관리법</p> <p>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21.8.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을 현행화함
36	<p style="text-align: center;"><출입국관리법 시행령></p> <p>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 중 24. 거주(F-2)의 가목부터 다 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별표 1 중 2 중 24. 거주(F-2)의 라목·바목 또는 사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p style="text-align: center;"><출입국관리법 시행령></p> <p>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타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라목·바목 또는 사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을 현행화함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37~41	<p>〈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p>	<p>〈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 2, 별표 1의3 : 일반체류자격(제12조 관련) 〉</p> <p style="text-align: center;"><u>세부 내용 현행화 교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을 현행화함
43	<p>마.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p> <p>2) 공고문 포함사항</p> <p>○ (제출서류) 서류종류, 작성방법 등을 안내</p> <p>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서식22] 1부</p> <p>②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31] 1부</p> <p>※ 위에 제시한 공모에 필요한 서류 외에 강사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음</p>	<p>마.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p> <p>2) 공고문 포함사항</p> <p>○ (제출서류) 서류종류, 작성방법 등을 안내</p> <p>-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서식22] 1부</p> <p>※ 위에 제시한 공모에 필요한 서류 외에 강사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확정 전 단계(서류, 면접 등)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 수집 불가. 최종 합격자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함(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44	<p>다) 평가위원회 구성</p> <p>① (구성) 평가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p> <p>- 면접 시 외부위원(학부모, 지역사회전문가)이 50%이상 참여</p> <p>바.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 및 위수탁계약 체결(학교의 장)</p> <p>2) 위·수탁 계약체결</p> <p>가) 외부강사 계약 체결 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국민건강검진 결과서 가능)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임</p> <p>다) 개인위탁 외부강사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를 제출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 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를 실시하고,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p>	<p>다) 평가위원회 구성</p> <p>① (구성) 평가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 참여 비율 50% 이상)</p> <p>- 면접 시 외부위원(학부모, 지역사회전문가)이 50%이상 참석</p> <p>바.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 및 위수탁계약 체결(학교의 장)</p> <p>2) 위·수탁 계약체결</p> <p>가) 외부강사 계약 체결 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국민건강검진결과서 가능),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임</p> <p>다) 개인위탁 외부강사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를 제출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 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를 실시하고,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 구성 및 면접시 외부위원 비율을 명확히 함 ■ ‘건강검진대체통보서’ 를 추가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하나, 채용 신체검사서 범위에 들어가므로 삭제, 건강검진대체통보서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이 필요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를 추가함 - 공동이용 사무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사전동의 없이 이용가능한 사무이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45	<p>3) 개인위탁 계약 시 구비 서류</p> <p>가) 개인위탁 외부강사의 경우</p> <p>②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p> <p>※ 회신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을 통해 조회 가능</p> <p>③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p> <p>※ 보건소, 병원 등 발급 기관에 관계없이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가능(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p> <p>※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국민건강검진결과서’ 가능(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채용 신체검사서 병력 요건 확인 필요)</p>	<p>3) 개인위탁 계약 시 구비 서류</p> <p>가) 개인위탁 외부강사의 경우</p> <p>②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66] 1부</p> <p>③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 31] 1부</p> <p>※ 회신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을 통해 조회 가능</p> <p>④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p> <p>※ 보건소, 병원 등 발급 기관에 관계없이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가능(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p> <p>※ 국민건강검진결과서 (건강검진대체통보서)도 가능하나,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 결과서 추가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대체통보서’ 를 추가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를 추가함
46	<p>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의 경우: 당해 학교 재직교원의 경우</p> <p>다)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의 경우: 타교 재직 교원의 경우</p> <p>라) 원어민 강사의 경우</p> <p>②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p> <p>※ 회신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을 통해 조회 가능</p> <p>③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p>	<p>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등 포함)의 경우: 당해 학교 재직교원의 경우</p> <p>다)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등 포함)의 경우: 타교 재직 교원의 경우</p> <p>라) 원어민 강사의 경우</p> <p>②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66] 1부</p> <p>③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p> <p>※ 회신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을 통해 조회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직 교사 등을 포함하기 위함(교육부안) ▪ ‘건강검진대체통보서’ 를 추가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를 추가함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포함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p> <p>※ 보건소, 병원 등 발급 기관에 관계없이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가능(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p> <p>※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국민 건강검진결과서’ 가능(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채용 신체검사서 병력 요건 확인 필요)</p>	<p>④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홍부 X-ray 포함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p> <p>※ 보건소, 병원 등 발급 기관에 관계없이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가능(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p> <p>※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국민 건강검진결과서(건강검진대체통보서)’ 가능(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채용신체검사서 병력 요건 확인 필요)</p> <p>※ 국민건강검진결과서(건강검진대체통보서)도 가능하나,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p>	
47	<p>●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같음</p> <p>※ 단,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등은 1년 단위로 징구,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동의서는 계약 시 마다 징구)</p> <p>바.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 및 위·수탁 계약체결(학교의 장)</p> <p>5)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p> <p>가) 법적근거</p> <p>- 「아동복지법」 제29조 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p> <p>나) 진행절차(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름)</p> <p>②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학교의 장→관할 경찰서장)</p> <p>④ 통보(관할 경찰서장→학교의 장)</p>	<p>●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같음</p> <p>※ 단,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등은 1년 단위로 징구,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동의서는 계약 시 마다 징구)</p> <p>※ 국민건강검진결과서(건강검진대체통보서)도 가능하나,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p> <p>바.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 및 위·수탁 계약체결(학교의 장)</p> <p>5)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p> <p>가) 법적근거</p> <p>-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p> <p>나) 진행절차(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름)</p> <p>②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계약시 건강검진 서류 명시 ■ 관련 법령 현행화 및 용어를 순화함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경찰서장은 서식(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회신서)에 의거해 회신함 - 회신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의 유무와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유무만 통보(성범죄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내역,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사항은 회신하지 않음) 	<p>(학교의 장→관할 경찰서장)</p> <p>④ 통보(관할 경찰서장→학교의 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경찰서장은 서식(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회신서)에 의거해 회신함 - 회신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의 유무와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유무만 통보(성범죄 경력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내역,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사항은 회신하지 않음) 	
48-51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text-align: center;">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법령>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관련 법령>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text-align: center;">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법령>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관련 법령> </div>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세부 내용 현행화 교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을 현행화함
52	바.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 및 위·수탁 계약체결(학교의 장) 7) 강사 재계약	바.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 및 위·수탁 계약체결(학교의 장) 7) 강사활용 가)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해 우수강사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나) 농어촌 소재학교는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군인, 귀농인, 기업인 등)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다) 농어촌 지역 등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 불가피한 사정(결혼, 부모상, 교통사고, 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이드라인(29쪽)의 ‘강사활용’ 내용을 길라잡이에 반영함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지변 등)의 경우, 학교장은 강사와 협의하여 보강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p> <p>마) 임신, 출산 등의 경우 대체 강사 활용(최대3개월 이내)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p> <p>※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제출(서류 사본 대체 가능, 유효기간 확인). 건강검진대체통보서도 가능하나,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p> <p>※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실시</p> <p>8) 강사 재계약</p>					
55	<p><2022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p> <p>1. (취지) 단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위탁업체는 반드시 비영리법인(단체)이어야 함)</p> <p>2. (업체 위탁 운영 절차)</p> <table border="1" data-bbox="248 911 869 1077">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준비</td> <td> ①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 조사(학생, 학부모, 교사) - 전부 또는 일부 업체위탁 여부 포함(필요시) ② 방과후학교 (연간)운영 계획 수립 준비 -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운영 여부 검토 등 </td> </tr> </table>	준비	①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 조사(학생, 학부모, 교사) - 전부 또는 일부 업체위탁 여부 포함(필요시) ② 방과후학교 (연간)운영 계획 수립 준비 -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운영 여부 검토 등	<p><2023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p> <p>1. (취지) 단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지문)를 받아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2. (업체 위탁 운영 절차)</p> <table border="1" data-bbox="907 911 1527 1145">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준비</td> <td> ①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 조사(학생, 학부모, 교사) - 전부 또는 일부 업체위탁 여부 포함(필요시) ② 방과후학교 (연간)운영 계획 수립 준비 - 사회재난이나 자연 재난대비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운영 여부 검토 등 </td> </tr> </table>	준비	①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 조사(학생, 학부모, 교사) - 전부 또는 일부 업체위탁 여부 포함(필요시) ② 방과후학교 (연간)운영 계획 수립 준비 - 사회재난이나 자연 재난대비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운영 여부 검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단체) 제한 사항 삭제 ■ p 14쪽과 동일 절차 반영
준비	①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 조사(학생, 학부모, 교사) - 전부 또는 일부 업체위탁 여부 포함(필요시) ② 방과후학교 (연간)운영 계획 수립 준비 -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운영 여부 검토 등						
준비	①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 조사(학생, 학부모, 교사) - 전부 또는 일부 업체위탁 여부 포함(필요시) ② 방과후학교 (연간)운영 계획 수립 준비 - 사회재난이나 자연 재난대비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운영 여부 검토 등						
56	<p>3. (위탁업체의 선정) 단위학교는 위탁업체[비영리법인(단체)]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p> <p>① 위탁업체[비영리법인(단체)] 선정시~</p> <p>② 위탁업체[비영리법인(단체)]의 선정은~</p> <p>4. (위탁업체 선정의 투명성 강화)</p>	<p>3. (위탁업체의 선정) 단위학교는 위탁업체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p> <p>① 위탁업체 선정시~</p> <p>② 위탁업체의 선정은~</p> <p>4. (위탁업체 선정의 투명성 강화)</p> <p>① 단위학교는 위탁업체 선정 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단체) 제한 사항 삭제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① 단위학교는 위탁업체[비영리법인(단체)] 선정 시, ~ ②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비영리법인(단체)] 선정과정의 ~ ③ 단위학교는 위탁업체[비영리법인(단체)]의 ~ ④ 비영리법인(단체)과의 계약은 ~	②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 ③ 단위학교는 위탁업체의 ~ ④ 위탁업체와의 계약은 ~	
57	6. (위탁업체와의 계약) ① 단위학교는 위탁업체[비영리법인(단체)]와의 계약 시~ ② 단위학교는 위탁업체[비영리법인(단체)]가 제시하는~ 가) 일부 위탁 ● 외부기관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일부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모형 나) 전부 위탁 ● 외부기관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전부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모형 ● 방과후학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담당함으로써 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가 경감될 수 있음	6. (위탁업체와의 계약) ① 단위학교는 위탁업체와의 계약 시~ ② 단위학교는 위탁업체가 제시하는~ 가) 일부 위탁 ● 업체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일부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모형 나) 전부 위탁 ● 업체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전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모형 ● 방과후학교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담당함으로써 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가 경감될 수 있음	■ 비영리법인(단체) 제한 사항 삭제 ■ 외부기관을 업체로 구체화함
59	다) 수강료 산출 내역 (1) 수강료 산출 ● 수강료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송비로 산출하되 학생들에게 통합 징수, 단, 항목별로 별도로 집행함 ※ 업체위탁의 입찰은 강사료만을 대상으로 함 ※ 도서 및 재료구입은 별도의 물품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다) 수강료 산출 내역 (1) 수강료 산출 ● 수강료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송비로 산출하되 학생들에게 통합 징수, 단, 항목별로 별도로 집행함 ※ 업체위탁의 입찰은 강사료만을 대상으로 함 ※ 도서 및 재료구입은 별도의 물품계약을 통해 계약을 진행(지방계약법령에 따름)	■ 도서 및 재료 구입의 계약방법 명확하게 기재 (지방계약법 준용)
61	※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확인: 통계청(2020.12. 기준 0.5%)	※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확인: 통계청(2021.12. 기준 2.5%)	■ 교육부 수정사항 반영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 임금상승률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020년 기준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는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p>② 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여비, 유인물비, 연수비, 임차료, 사업주부담 보험료, 기타 과업내용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의미함 ※ 임차료는 강사 연수에 필요한 회의실 임차료 등을 의미하며, 업체의 임원과 직원 급료 및 사무실 임차료 등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므로 경비에 포함하지 않음 ● 경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인건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함, 다만, 강사가 일정금의 고정급을 받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음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에 운영된 경우는 전년도 경비액이 강사료의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고려한 후 그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하여 비율을 반영함 - 신설 프로그램의 경우는 경비 추정치를 산정하여 비율을 반영함 <p>예)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결과 학생 1인당 강사료 중 경비가 월 1,000원 정도 소요되었을 경우 → ㉠ 경비의 적정성 검토·산정(전년도 경비 보다 200원을 인상하여 1,200원으로 가정) → ㉡ 인건비 산정분에 대해 몇 %를 하였을 경우 1,200원이 되는 지 계산(인건비를 25,000원이라 산정하였을 경우는 $1,200원 \div 25,000원 = 0.048$) → ㉢ 경비 비율 확정(인건비의 4.8%)</p> <p>예) 금년도 신설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성격상 경비가 1,5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경우 → ㉠ 신설 프로그램의 경비를 인건비의 몇 %를 하였을 경우 1,500원이 되는 지 계산(인건비를 20,000원으로 산정하였을 경우는 $1,500원 \div 20,000원 = 0.075$) → ㉡ 경비 비율 확정(인건비의 7.5%)</p>	<p>※ 임금상승률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021년 기준 3.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비율은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p>② 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여비, 유인물비, 연수비, 임차료, 사업주부담 보험료, 기타 과업내용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의미함 ● 경비는 인건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함, 다만, 강사가 일정금의 고정급을 받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음 - 경비 비율은 인건비 비율에 따라 변동됨 <p>③ 일반관리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유지를 위해 위탁업체의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업체의 임원과 사무실 직원의 급료 등) 등을 의미함 ● 일반관리비는 강사료 원가에서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한 금액의 6%내에서 반영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 반영 <p>④ 이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윤은 강사료 원가에서 인건비, 경비(코디, 안전도우미 등),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의 10%내에서 반영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 반영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③ 일반관리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유지를 위해 위탁업체의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업체의 임원과 사무실 직원의 급료 등) 등을 의미함 • 일반관리비는 강사료 원가에서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한 금액의 6%내에서 반영 <p><신설></p> <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어윤율) 용역: 100분의 6(2016.1.15개정)</p> <p>④ 이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윤은 강사료 원가에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의 10%내에서 반영 <p><신설></p>																				
6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px;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③</td> <td style="width: 100px; vertical-align: middle;">경비 산출</td> <td style="padding-left: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 산출(인건비 단가 × 경비 비율*) = 경비 ※ 경비 산출 금액 내에서 유인물, 연수비, 여비, 기타 과업내용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p><신설></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④</td> <td style="vertical-align: middle;">일반관리비 산출</td> <td style="padding-left: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하여 6% 이내 산정 (인건비 단가+경비) × 일반관리비 비율 = 일반관리비 <p><신설></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⑤</td> <td style="vertical-align: middle;">이윤 산출</td> <td style="padding-left: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윤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산하여 10% 이내 산정 (인건비 단가+경비+일반관리비) × 이윤 비율 = 이윤 <p><신설></p> </td> </tr> </table>	③	경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 산출(인건비 단가 × 경비 비율*) = 경비 ※ 경비 산출 금액 내에서 유인물, 연수비, 여비, 기타 과업내용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p><신설></p>	④	일반관리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하여 6% 이내 산정 (인건비 단가+경비) × 일반관리비 비율 = 일반관리비 <p><신설></p>	⑤	이윤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윤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산하여 10% 이내 산정 (인건비 단가+경비+일반관리비) × 이윤 비율 = 이윤 <p><신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px;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③</td> <td style="width: 100px; vertical-align: middle;">경비 산출</td> <td style="padding-left: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 산출(인건비 단가 × 경비 비율*) = 경비 ※ 경비 산출 금액 내에서 유인물, 연수비, 여비, 기타 과업내용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경비 비율은 인건비 비율에 따라 변동됨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④</td> <td style="vertical-align: middle;">일반관리비 산출</td> <td style="padding-left: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하여 6% 이내 산정 (인건비 단가+경비) × 일반관리비 비율 = 일반관리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 반영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⑤</td> <td style="vertical-align: middle;">이윤 산출</td> <td style="padding-left: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윤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산하여 10% 이내 산정 (인건비 단가+경비+일반관리비) × 이윤 비율 = 이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 반영 </td> </tr> </table>	③	경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 산출(인건비 단가 × 경비 비율*) = 경비 ※ 경비 산출 금액 내에서 유인물, 연수비, 여비, 기타 과업내용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경비 비율은 인건비 비율에 따라 변동됨 	④	일반관리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하여 6% 이내 산정 (인건비 단가+경비) × 일반관리비 비율 = 일반관리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 반영 	⑤	이윤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윤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산하여 10% 이내 산정 (인건비 단가+경비+일반관리비) × 이윤 비율 = 이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 반영 	<p>■ 교육부 수정사항 반영</p>
③	경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 산출(인건비 단가 × 경비 비율*) = 경비 ※ 경비 산출 금액 내에서 유인물, 연수비, 여비, 기타 과업내용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p><신설></p>																			
④	일반관리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하여 6% 이내 산정 (인건비 단가+경비) × 일반관리비 비율 = 일반관리비 <p><신설></p>																			
⑤	이윤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윤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산하여 10% 이내 산정 (인건비 단가+경비+일반관리비) × 이윤 비율 = 이윤 <p><신설></p>																			
③	경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 산출(인건비 단가 × 경비 비율*) = 경비 ※ 경비 산출 금액 내에서 유인물, 연수비, 여비, 기타 과업내용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경비 비율은 인건비 비율에 따라 변동됨 																			
④	일반관리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하여 6% 이내 산정 (인건비 단가+경비) × 일반관리비 비율 = 일반관리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 반영 																			
⑤	이윤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윤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산하여 10% 이내 산정 (인건비 단가+경비+일반관리비) × 이윤 비율 = 이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 반영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63	<p>○ 아래의 예시는 3개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A학교의 강사료를 가정하고 작성한 강사료임</p> <table border="1" data-bbox="241 347 880 1074">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rowspan="3">프로그램</th> <th rowspan="3">전년도 기초금 액의 학생1 인당 강사료</th> <th colspan="4">금년도 학생 1인당 강사료</th> <th rowspan="3">계</th> </tr> <tr> <th>인건비</th> <th>경비</th> <th>일반 관리비</th> <th>이윤</th> </tr> <tr> <th>비율 (%)</th> <th>비율 (%)</th> <th>비율 (%)</th> <th>비율 (%)</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인상률 (3%) 반영 (예시)</td> <td rowspan="2">영어 회화</td> <td rowspan="2">48,000</td> <td>40,005</td> <td>2,396</td> <td>2,544</td> <td>4,495</td> <td rowspan="2">49,440</td> </tr> <tr> <td>80.916</td> <td>5.9</td> <td>6</td> <td>10</td> </tr> <tr> <td rowspan="2">1,000원 인상 (예시)</td> <td rowspan="2">창의 수학</td> <td rowspan="2">32,000</td> <td>26,954</td> <td>1,348</td> <td>1,698</td> <td>3,000</td> <td rowspan="2">33,000</td> </tr> <tr> <td>81.679</td> <td>5</td> <td>6</td> <td>10</td> </tr> <tr> <td rowspan="2">3,000원 인상 (예시)</td> <td rowspan="2">생명 과학</td> <td rowspan="2">33,000</td> <td>29,404</td> <td>1,471</td> <td>1,853</td> <td>3,272</td> <td rowspan="2">36,000</td> </tr> <tr> <td>81.679</td> <td>5</td> <td>6</td> <td>10</td> </tr> </tbody> </table>	구분	프로그램	전년도 기초금 액의 학생1 인당 강사료	금년도 학생 1인당 강사료				계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인상률 (3%) 반영 (예시)	영어 회화	48,000	40,005	2,396	2,544	4,495	49,440	80.916	5.9	6	10	1,000원 인상 (예시)	창의 수학	32,000	26,954	1,348	1,698	3,000	33,000	81.679	5	6	10	3,000원 인상 (예시)	생명 과학	33,000	29,404	1,471	1,853	3,272	36,000	81.679	5	6	10	<p>○ 아래의 예시는 3개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A학교의 강사료를 가정하고 작성한 강사료임</p> <table border="1" data-bbox="902 347 1541 1074">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rowspan="3">프로그램</th> <th rowspan="3">전년도 기초금 액의 학생1 인당 강사료</th> <th colspan="4">금년도 학생 1인당 강사료</th> <th rowspan="3">계</th> </tr> <tr> <th>인건비</th> <th>경비</th> <th>일반 관리비</th> <th>이윤</th> </tr> <tr> <th>비율 (%)</th> <th>비율 (%)</th> <th>비율 (%)</th> <th>비율 (%)</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인상률 (3%) 반영 (예시)</td> <td rowspan="2">영어 회화</td> <td rowspan="2">48,000</td> <td>39,552</td> <td>2,849</td> <td>2,544</td> <td>4,495</td> <td rowspan="2">49,440</td> </tr> <tr> <td>80</td> <td>7.2</td> <td>6</td> <td>10</td> </tr> <tr> <td rowspan="2">1,000원 인상 (예시)</td> <td rowspan="2">창의 수학</td> <td rowspan="2">32,000</td> <td>26,730</td> <td>1,572</td> <td>1,698</td> <td>3,000</td> <td rowspan="2">33,000</td> </tr> <tr> <td>81</td> <td>5.88</td> <td>6</td> <td>10</td> </tr> <tr> <td rowspan="2">3,000원 인상 (예시)</td> <td rowspan="2">생명 과학</td> <td rowspan="2">33,000</td> <td>29,160</td> <td>1,715</td> <td>1,852</td> <td>3,273</td> <td rowspan="2">36,000</td> </tr> <tr> <td>81</td> <td>5.88</td> <td>6</td> <td>10</td> </tr> </tbody> </table>	구분	프로그램	전년도 기초금 액의 학생1 인당 강사료	금년도 학생 1인당 강사료				계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인상률 (3%) 반영 (예시)	영어 회화	48,000	39,552	2,849	2,544	4,495	49,440	80	7.2	6	10	1,000원 인상 (예시)	창의 수학	32,000	26,730	1,572	1,698	3,000	33,000	81	5.88	6	10	3,000원 인상 (예시)	생명 과학	33,000	29,160	1,715	1,852	3,273	36,000	81	5.88	6	10	<p>■ 교육부 수정사항 반영</p>
구분	프로그램				전년도 기초금 액의 학생1 인당 강사료	금년도 학생 1인당 강사료				계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인상률 (3%) 반영 (예시)	영어 회화	48,000	40,005	2,396	2,544	4,495	49,440																																																																																																				
			80.916	5.9	6	10																																																																																																					
1,000원 인상 (예시)	창의 수학	32,000	26,954	1,348	1,698	3,000	33,000																																																																																																				
			81.679	5	6	10																																																																																																					
3,000원 인상 (예시)	생명 과학	33,000	29,404	1,471	1,853	3,272	36,000																																																																																																				
			81.679	5	6	10																																																																																																					
구분	프로그램	전년도 기초금 액의 학생1 인당 강사료	금년도 학생 1인당 강사료				계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인상률 (3%) 반영 (예시)	영어 회화	48,000	39,552	2,849	2,544	4,495	49,440																																																																																																				
			80	7.2	6	10																																																																																																					
1,000원 인상 (예시)	창의 수학	32,000	26,730	1,572	1,698	3,000	33,000																																																																																																				
			81	5.88	6	10																																																																																																					
3,000원 인상 (예시)	생명 과학	33,000	29,160	1,715	1,852	3,273	36,000																																																																																																				
			81	5.88	6	10																																																																																																					
67	<p>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2단계경쟁입찰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예시1)</p>	<p>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2단계경쟁입찰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예시1)</p>	<p>■ 교육부 수정사항 반영</p>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table border="1" data-bbox="248 252 837 802"> <thead> <tr> <th>분야</th> <th>세부심사항목</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td rowspan="13">정량평가 (35)</td><td>75% 이상</td><td>10</td></tr> <tr><td>60% 이상 75% 미만</td><td>9</td></tr> <tr><td>45% 이상 60% 미만</td><td>8</td></tr> <tr><td>30% 이상 45% 미만</td><td>7</td></tr> <tr><td>30% 미만(미제출 포함)</td><td>6</td></tr> <tr><td>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td><td>10~7</td></tr> <tr><td>자료 미제출 시</td><td>6</td></tr> <tr><td>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td><td>10</td></tr> <tr><td>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td><td>○</td></tr> <tr><td>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td><td>○</td></tr> <tr><td>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td><td>○</td></tr> <tr><td>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td><td>○</td></tr> <tr><td>확약서 2번 항목 동의</td><td>5</td></tr> <tr><td>확약서 2번 항목 부동의</td><td>0</td></tr> </tbody> </table> <p data-bbox="248 815 882 991"> ※ 평가점수가 ○○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 기초금액 산정 시 책정한 강사료 단가에 월별 운영 시간 수와 학생 수를 반영하여 지급(56쪽 기초금액 고시(예시) 참고)하되, 낙찰금액 대비가 아닌 기초금액 대비임을 유의 <신설> </p>	분야	세부심사항목	평점	정량평가 (35)	75% 이상	10	60% 이상 75% 미만	9	45% 이상 60% 미만	8	30% 이상 45% 미만	7	30% 미만(미제출 포함)	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7	자료 미제출 시	6	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	10	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	○	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	○	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	○	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	○	확약서 2번 항목 동의	5	확약서 2번 항목 부동의	0	<table border="1" data-bbox="907 252 1496 802"> <thead> <tr> <th>분야</th> <th>세부심사항목</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td rowspan="13">정량평가 (35)</td><td>75% 이상</td><td>10</td></tr> <tr><td>60% 이상 75% 미만</td><td>9</td></tr> <tr><td>45% 이상 60% 미만</td><td>8</td></tr> <tr><td>30% 이상 45% 미만</td><td>7</td></tr> <tr><td>30% 미만(미제출 포함)</td><td>6</td></tr> <tr><td>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td><td>10~7</td></tr> <tr><td>자료 미제출 시</td><td>6</td></tr> <tr><td>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td><td>10</td></tr> <tr><td>기초금액 대비 (A-1%) 이상 지급</td><td>9</td></tr> <tr><td>기초금액 대비 (A-2%) 이상 지급</td><td>8</td></tr> <tr><td>기초금액 대비 (A-3%) 이상 지급</td><td>7</td></tr> <tr><td>기초금액 대비 (A-4%) 이상 지급</td><td>6</td></tr> <tr><td>확약서 2번 항목 동의</td><td>5</td></tr> <tr><td>확약서 2번 항목 부동의</td><td>0</td></tr> </tbody> </table> <p data-bbox="907 815 1541 1050"> ※ 평가점수가 ○○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 기초금액 산정 시 책정한 강사료 단가에 월별 운영 시간 수와 학생 수를 반영하여 지급(56쪽 기초금액 고시(예시) 참고)하되, 낙찰금액 대비가 아닌 기초금액 대비임을 유의 ※ 강사료를 인건비 지급 비율보다 상향 지급하는 경우 2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 반영 가능 <인건비 비율 상향 가점 예시> </p> <div data-bbox="929 1058 1420 112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기초금액 대비 (A+2)% 이상 지급 2점 기초금액 대비 (A+1)% 이상 지급 1점</p> </div>	분야	세부심사항목	평점	정량평가 (35)	75% 이상	10	60% 이상 75% 미만	9	45% 이상 60% 미만	8	30% 이상 45% 미만	7	30% 미만(미제출 포함)	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7	자료 미제출 시	6	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	10	기초금액 대비 (A-1%) 이상 지급	9	기초금액 대비 (A-2%) 이상 지급	8	기초금액 대비 (A-3%) 이상 지급	7	기초금액 대비 (A-4%) 이상 지급	6	확약서 2번 항목 동의	5	확약서 2번 항목 부동의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기준 문구 명확화 ■ 교육부 사항 동일하게 반영
분야	세부심사항목	평점																																																																	
정량평가 (35)	75% 이상	10																																																																	
	60% 이상 75% 미만	9																																																																	
	45% 이상 60% 미만	8																																																																	
	30% 이상 45% 미만	7																																																																	
	30% 미만(미제출 포함)	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7																																																																	
	자료 미제출 시	6																																																																	
	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	10																																																																	
	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	○																																																																	
	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	○																																																																	
	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	○																																																																	
	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	○																																																																	
	확약서 2번 항목 동의	5																																																																	
확약서 2번 항목 부동의	0																																																																		
분야	세부심사항목	평점																																																																	
정량평가 (35)	75% 이상	10																																																																	
	60% 이상 75% 미만	9																																																																	
	45% 이상 60% 미만	8																																																																	
	30% 이상 45% 미만	7																																																																	
	30% 미만(미제출 포함)	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7																																																																	
	자료 미제출 시	6																																																																	
	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	10																																																																	
	기초금액 대비 (A-1%) 이상 지급	9																																																																	
	기초금액 대비 (A-2%) 이상 지급	8																																																																	
	기초금액 대비 (A-3%) 이상 지급	7																																																																	
	기초금액 대비 (A-4%) 이상 지급	6																																																																	
	확약서 2번 항목 동의	5																																																																	
확약서 2번 항목 부동의	0																																																																		
68-69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2단계경쟁입찰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예시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2단계경쟁입찰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예시2)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30%;">평가항목</th> <th style="width:40%;">세부심사항목</th> <th style="width:10%;">평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1. 동 용역이행 수 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까지 완료한 최근 3 년간 수행실적 (최종 계약금 액 기준)</td> <td>75% 이상</td> <td>10</td> </tr> <tr> <td>60% 이상 75% 미만</td> <td>9</td> </tr> <tr> <td>45% 이상 60% 미만</td> <td>8</td> </tr> <tr> <td>30% 이상 45% 미만</td> <td>7</td> </tr> <tr> <td>30% 미만(미제출 포함)</td> <td>6</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rowspan="5">3. 근로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 성(15점)</td> <td rowspan="5">인건비 지출 이 행 확약서 제출 (10점)*</td> <td>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td> <td>10</td> </tr> <tr> <td>기초금액 대비 (A-〇)% 이상 지급</td> <td>〇</td> </tr> <tr> <td>기초금액 대비 (A-〇)% 이상 지급</td> <td>〇</td> </tr> <tr> <td>기초금액 대비 (A-〇)% 이상 지급</td> <td>〇</td> </tr> <tr> <td>기초금액 대비 (A-〇)% 이상 지급</td> <td>〇</td> </tr> </tbody> </table> <p>※ 평가점수가 〇〇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 기초금액 산정 시 책정한 강사로 단가에 월별 운영 시간 수와 학생 수를 반영하여 지급(56쪽 기초금액 고시(예시) 참고)하되, 낙찰금액 대비가 아닌 기초금액 대비임을 유의 <신설></p>	평가항목	세부심사항목	평점	1. 동 용역이행 수 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까지 완료한 최근 3 년간 수행실적 (최종 계약금 액 기준)	75% 이상	10	60% 이상 75% 미만	9	45% 이상 60% 미만	8	30% 이상 45% 미만	7	30% 미만(미제출 포함)	6	3. 근로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 성(15점)	인건비 지출 이 행 확약서 제출 (10점)*	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	10	기초금액 대비 (A-〇)% 이상 지급	〇	기초금액 대비 (A-〇)% 이상 지급	〇	기초금액 대비 (A-〇)% 이상 지급	〇	기초금액 대비 (A-〇)% 이상 지급	〇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30%;">평가항목</th> <th style="width:40%;">세부심사항목</th> <th style="width:10%;">평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1. 동 용역이행 수 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까 지 완료한 최 근 3년간 수행 실적(최종 계 약금액 기준)</td> <td>당해용역 사업규모 대비 (3년간 수행실적 합계금액/ 기초금액) ×100 =</td> <td>75% 이상</td> <td>10</td> </tr> <tr> <td></td> <td>60% 이상 75% 미만</td> <td>9</td> </tr> <tr> <td></td> <td>45% 이상 60% 미만</td> <td>8</td> </tr> <tr> <td></td> <td>30% 이상 45% 미만</td> <td>7</td> </tr> <tr> <td></td> <td>30% 미만(미제출 포함)</td> <td>6</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rowspan="5">3. 근로환경 조성 계획의 적 정성(15점)</td> <td rowspan="5">인건비 지출 이 행 확약서 제출 (10점)*</td> <td>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td> <td>10</td> </tr> <tr> <td>기초금액 대비 (A-1)% 이상 지급</td> <td>9</td> </tr> <tr> <td>기초금액 대비 (A-2)% 이상 지급</td> <td>8</td> </tr> <tr> <td>기초금액 대비 (A-3)% 이상 지급</td> <td>7</td> </tr> <tr> <td>기초금액 대비 (A-4)% 이상 지급</td> <td>6</td> </tr> </tbody> </table> <p>※ 평가점수가 〇〇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 기초금액 산정 시 책정한 강사로 단가에 월별 운영 시간 수와 학생 수를 반영하여 지급(56쪽 기초금액 고시(예시) 참고)하되, 낙찰금액 대비가 아닌 기초금액 대비임을 유의 ※ 강사료를 인건비 지급 비율보다 상향 지급하는 경우 2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 반영 가능 <인건비 비율 상향 가점 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기초금액 대비 (A+2)% 이상 지급 2점</td> </tr> <tr> <td>기초금액 대비 (A+1)% 이상 지급 1점</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세부심사항목	평점	1. 동 용역이행 수 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까 지 완료한 최 근 3년간 수행 실적(최종 계 약금액 기준)	당해용역 사업규모 대비 (3년간 수행실적 합계금액/ 기초금액) ×100 =	75% 이상	10		60% 이상 75% 미만	9		45% 이상 60% 미만	8		30% 이상 45% 미만	7		30% 미만(미제출 포함)	6	3. 근로환경 조성 계획의 적 정성(15점)	인건비 지출 이 행 확약서 제출 (10점)*	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	10	기초금액 대비 (A-1)% 이상 지급	9	기초금액 대비 (A-2)% 이상 지급	8	기초금액 대비 (A-3)% 이상 지급	7	기초금액 대비 (A-4)% 이상 지급	6	기초금액 대비 (A+2)% 이상 지급 2점	기초금액 대비 (A+1)% 이상 지급 1점	
평가항목	세부심사항목	평점																																																												
1. 동 용역이행 수 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까지 완료한 최근 3 년간 수행실적 (최종 계약금 액 기준)	75% 이상	10																																																												
	60% 이상 75% 미만	9																																																												
	45% 이상 60% 미만	8																																																												
	30% 이상 45% 미만	7																																																												
	30% 미만(미제출 포함)	6																																																												
3. 근로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 성(15점)	인건비 지출 이 행 확약서 제출 (10점)*	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	10																																																											
		기초금액 대비 (A-〇)% 이상 지급	〇																																																											
		기초금액 대비 (A-〇)% 이상 지급	〇																																																											
		기초금액 대비 (A-〇)% 이상 지급	〇																																																											
		기초금액 대비 (A-〇)% 이상 지급	〇																																																											
평가항목	세부심사항목	평점																																																												
1. 동 용역이행 수 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까 지 완료한 최 근 3년간 수행 실적(최종 계 약금액 기준)	당해용역 사업규모 대비 (3년간 수행실적 합계금액/ 기초금액) ×100 =	75% 이상	10																																																											
		60% 이상 75% 미만	9																																																											
		45% 이상 60% 미만	8																																																											
		30% 이상 45% 미만	7																																																											
		30% 미만(미제출 포함)	6																																																											
3. 근로환경 조성 계획의 적 정성(15점)	인건비 지출 이 행 확약서 제출 (10점)*	기초금액 대비 (A)% 이상 지급	10																																																											
		기초금액 대비 (A-1)% 이상 지급	9																																																											
		기초금액 대비 (A-2)% 이상 지급	8																																																											
		기초금액 대비 (A-3)% 이상 지급	7																																																											
		기초금액 대비 (A-4)% 이상 지급	6																																																											
기초금액 대비 (A+2)% 이상 지급 2점																																																														
기초금액 대비 (A+1)% 이상 지급 1점																																																														
73	<p>② 강사로 산정의 적정성(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산정하는 등 우수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 (경비) 유인물비, 연수비, 기타 과업내용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고려했는가? -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의 6%이내에서 편성했는가? <p><신설></p>	<p>② 강사로 산정의 적정성(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산정하는 등 우수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 (경비) 유인물비, 연수비, 기타 과업내용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고려했는가? -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의 6%이내에서 편성했는가? <p>※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 반영</p>	<p>■ 교육부 사항 동일하게 반영</p>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이내에서 편성했는가? <신설></p>	<p>-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이내에서 편성했는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 반영</p>							
75	<p>(3) 입찰공고의 내용 ○ 입찰공고 시 제시할 사항</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신설> 18.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청렴서약서 관련 사항)</p> </div> <p>(4) 입찰 참가자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에 방과후학교 또는 교육관련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함 (법인은 정관에 수익사업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p>	<p>(3) 입찰공고의 내용 ○ 입찰공고 시 제시할 사항</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1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1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청렴서약서 관련 사항 등)</p> </div> <p>(4) 입찰 참가자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 <삭제></p>	<p>■ 지방계약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p>						
76-78	<p><신설></p>	<p>○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제한(중소기업자간우선조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구분</th> <th style="width: 50%;">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용역 조달</td> <td>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입찰</td> </tr> <tr> <td>추정가격 1억원 이상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현행 2.1억원)미만 물품, 용역 조달</td> <td>중소기업자 간 제한입찰</td> </tr> </tbody>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p> <p>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 참가여부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 가능여부를 개별학교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div>	구분	내 용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용역 조달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입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현행 2.1억원)미만 물품, 용역 조달	중소기업자 간 제한입찰	<p>■ 교육부 사항 동일하게 반영</p>
구분	내 용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용역 조달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입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현행 2.1억원)미만 물품, 용역 조달	중소기업자 간 제한입찰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5) 입찰서류 ○ 입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자격 입증 서류 포함) 2. 청렴서약서 3. 제안서(교재·교구 활용 계획서 필수 포함) 0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교구 활용 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 - 교구: 품명, 규격, 가격 등 4.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해당되는 경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출력물 가능 5.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1부 및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시 6.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7. 사용인장계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9. 비영리 기관 관련 서류(비영리기관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 허가서, 정관 등) 각 1부 등 <p><신설></p>	<p>(5) 입찰서류 ○ 입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자격 입증 서류 포함) 2. 청렴서약서 3. 제안서(교재·교구 활용 계획서 필수 포함) 0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교구 활용 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 - 교구: 품명, 규격, 가격 등 4.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해당되는 경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출력물 가능 5.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1부 및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시 6.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7. 사용인장계 1부 8. 등기사항증명서(법인) 1부 9. 비영리 기관인 경우 관련 서류(비영리기관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 허가서, 정관 등) 각 1부 등 <p>(6) 규격/가격동시입찰(2단계입찰)의 경우 입찰서류 제출 및 접수 (가) 규격서(제안서) 작성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서에 명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요청서의 규격서(제안서) 작성기준 준수 명시 . 작성기준을 위반한 제안서에 대해 제안서 접수 시 보완 요청(전자제출의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 - 제안요청서에 작성기준 및 작성기준을 위반한 제안서에 대해 보완하지 않는 경우 감점기준 명시 <p>(나) 규격/가격동시입찰(2단계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입찰서류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수기제출과 전자제출 중 택일(입찰공고서에 명시) - 수기제출의 경우: 제안서 제출방식은 이전과 동일 - 전자제출의 경우: 입찰공고서에 관련내용 명시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 조달업체가 입찰참가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규격서(제안서), 입찰참가 시 기타 필요서류]는 e-발주 시스템을 통해서만 전자제출이 가능(제출서류 용량 제한 확인)</p> <p>. 조달업체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가격 입찰서 제출 시에는 해당 파일들에 대한 첨부기능이 없으니, 공고서 작성 시 유의</p> <p>. 규격서(제안서)나라장터 입찰공고서 예시 및 매뉴얼은 [나라장터 누리집] → 종합쇼핑몰 아래 우측 [e-발주지원]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e-발주시스템을 이용한 규격가격/2단계 경쟁 입찰공고에 따른 수요기관 매뉴얼]과 [e-발주시스템 평가부분 이용 매뉴얼(사용신청서 양식) 안내를 숙지 후 입찰공고서 작성 및 입찰(제안서 제출 및 평가) 집행</p> <p>(다) 규격/가격동시입찰(2단계입찰)의 입찰서류 전자제출 방법 (나라장터 입력방법) 안내</p> <table border="1" data-bbox="913 778 1541 1177"> <thead> <tr> <th>e-발주 평가 시스템 이용 여부</th> <th>규격서 평가 방식</th> <th>평가방법 등</th> <th>e-발주 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이용안함</td> <td>해당 없음</td> <td>조달청에서 제안서복호화 후 발주기관 연락하면 제안서 확인 평가점수 나라장터 입력</td> <td>이용 신청 필요</td> </tr> <tr> <td rowspan="2">이용</td> <td>오프라인 (현장) 평가</td> <td>위원 평가점수를 e-발주 평가시스템에 입력 사전준비 필요</td> <td>이용 신청 필요</td> </tr> <tr> <td>온라인 (화상) 평가</td> <td>온라인 화상 평가 점수입력 등은 오프라인평가와 동일</td> <td>이용 신청 필요</td> </tr> </tbody> </table> <p>- 규격서(제안서) 제출시작일시 및 마감일시는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동일하게 시스템 자동 입력</p> <p>(라) 입찰서류 접수</p> <p>- 제안서 접수담당자는 입찰공고서에 제안서 작성기준을 별도로 제시한 경우에 제안서 접수 시 작성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업체에서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평가 전일 까지 수정보완토록 함</p>	e-발주 평가 시스템 이용 여부	규격서 평가 방식	평가방법 등	e-발주 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이용안함	해당 없음	조달청에서 제안서복호화 후 발주기관 연락하면 제안서 확인 평가점수 나라장터 입력	이용 신청 필요	이용	오프라인 (현장) 평가	위원 평가점수를 e-발주 평가시스템에 입력 사전준비 필요	이용 신청 필요	온라인 (화상) 평가	온라인 화상 평가 점수입력 등은 오프라인평가와 동일	이용 신청 필요	
e-발주 평가 시스템 이용 여부	규격서 평가 방식	평가방법 등	e-발주 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이용안함	해당 없음	조달청에서 제안서복호화 후 발주기관 연락하면 제안서 확인 평가점수 나라장터 입력	이용 신청 필요															
이용	오프라인 (현장) 평가	위원 평가점수를 e-발주 평가시스템에 입력 사전준비 필요	이용 신청 필요															
	온라인 (화상) 평가	온라인 화상 평가 점수입력 등은 오프라인평가와 동일	이용 신청 필요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6) 재입찰, 재공고입찰, 새로운 입찰	<p>- 제안서 평가담당자는 작성기준을 위반한 제안서에 대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점하고 평가회의시 평가위원회에 감점현황을 공개한 후 평가</p> <p>(7) 재입찰, 재공고입찰, 새로운 입찰</p>																					
79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신용평가기관명</td></tr> <tr><td>나이스디앤비(주)</td></tr> <tr><td>NICE평가정보(주)</td></tr> <tr><td>에스씨아이평가정보(주)</td></tr> <tr><td>한국기업데이터</td></tr> <tr><td>한국기업평가</td></tr> <tr><td>한국신용평가</td></tr> <tr><td>NICE신용평가(주)</td></tr> <tr><td>이크레더블</td></tr> <tr><td>SCR서울신용평가(주)</td></tr> </table>	신용평가기관명	나이스디앤비(주)	NICE평가정보(주)	에스씨아이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R서울신용평가(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신용평가기관명</td></tr> <tr><td>나이스디앤비</td></tr> <tr><td>나이스평가정보(주)</td></tr> <tr><td>에스씨아이평가정보</td></tr> <tr><td>한국기업데이터</td></tr> <tr><td>한국기업평가</td></tr> <tr><td>한국신용평가</td></tr> <tr><td>나이스신용평가(주)</td></tr> <tr><td>(주)이크레더블</td></tr> <tr><td>서울신용평가(주)</td></tr> </table>	신용평가기관명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에스씨아이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사항 동일하게 반영
신용평가기관명																							
나이스디앤비(주)																							
NICE평가정보(주)																							
에스씨아이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R서울신용평가(주)																							
신용평가기관명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에스씨아이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주)																							
81	<p>④ 관리 영역 : 학교 행정 업무 지원, 소통 계획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행정 업무 지원 및 소통계획과 기타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등 평가 ● 학교 행정 업무 지원은 코디네이터 등의 보조인력 배치 계획을 말하며, 주기적으로 학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계획 등 평가 	<p>④ 관리 영역 : 학교 행정 업무 지원, 소통 계획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행정 업무 지원 및 소통계획과 기타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등 평가 ● 학교 행정 업무 지원은 보조인력 배치 계획을 말하며, 주기적으로 학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계획 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사항 동일하게 반영 																				
84	<p>☉ 업체 소속 강사 관련 자료: 성범죄 경력 및 이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원어민강사의 경우 비자 사본(비자종류 및 유효기간 명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강사별 학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활동이력서(경력증명서) 등</p>	<p>☉ 업체 소속 강사 관련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이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도 가능) 또는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원어민강사의 경우 비자 사본(비자종류 및 유효기간 명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사항 동일하게 반영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강사별 학력 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활동이력서(경력증명서) 등	
84~85	<p>(4) 계약 시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및 관련 부수 업무 외에 ‘학교의 행정 업무 수행’ 등 강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함(지방계약법 제6조 관련) ○ 계약보증금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징수(원칙) 또는 면제 가능(지방계약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1~53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관련) - 계약보증금 납부면제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확약서)를 징구(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인지세(수입인지) 징수(인지세법 제1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관련) <p>(5) 계약보증금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세입 조치 하되 기성부분의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해서는 안 됨(시행령 제54조) 	<p>(4) 계약 시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및 관련 부수 업무 외에 ‘학교의 행정 업무 수행’ 등 강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함(지방계약법 제6조 관련) ○ 계약보증금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징수(원칙) 또는 면제 가능(지방계약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53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관련) - 계약보증금 납부면제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확약서)를 징구(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인지세(수입인지) 징수(인지세법 제1조 및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관련) <p>(5) 계약보증금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세입 조치 하되 기성부분의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해서는 안 됨(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5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사항 동일하게 반영
86 ~ 88	<p style="text-align: center;"><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사항 동일하게 반영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p> <p>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p> <p>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p> <p>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p> <p>가.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임·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p> <p>나.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p> <p>다.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p> <p>라. 제3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p> <p>마.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p> <p>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p> <p>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p> <p>아. 그 밖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p> <p>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p> <p>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p> <p>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p>	<p>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p> <p>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p> <p>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p> <p>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p> <p>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p> <p>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p> <p>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p> <p>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p> <p>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p> <p>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p> <p>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p> <p>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p> <p>아. 그 밖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p> <p>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p>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p> <p style="text-align: center;"><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p> <p>② 법 제31조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p>1.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p> <p>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p> <p>다.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p> <p>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p> <p>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p> <p>바.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p> <p>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p> <p>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p> <p>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p> <p>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p>1.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p> <p>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p> <p>다. 삭제 <2022. 9. 20.></p> <p>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p> <p>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p>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p> <p>라.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p> <p>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p> <p>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p>	<p>바.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p> <p>사.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시설계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p> <p>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p> <p>나.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p> <p>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p> <p>라.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p> <p>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p> <p>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p> <p>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 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p>	
89	<p>(2) 수의계약 배제사유</p> <p>※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참고</p> <p>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p> <p>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p> <p>※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p>	<p>(2) 수의계약 배제사유</p> <p>※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참고</p> <p>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p> <p>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p> <p>※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p>	<p>■ [시행 2022. 1. 11.] [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 1. 7., 일부개정]</p>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3장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101	<p>2. (주요 업무)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마을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모델 운영</p> <p>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 방과후 마을 학교 추진체계 구축 및 협력 운영</p> <p>나. 마을 내 인프라를 활용한 학교와 학교 밖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지원</p> <p>다. 방과후학교 참여 비영리법인(또는 단체) 발굴 지원</p>	<p>2. (주요 업무)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지역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모델 운영</p> <p>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 지역협력 체제 구축 및 협력 운영</p> <p>나.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한 학교와 학교 밖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지원</p> <p>다. 방과후학교 참여 기관 또는 단체 등 발굴 지원</p>	<p>■ 대상 범위의 확대 및 정책 사업명 변경</p>
4장 회계 관리			
113	<p>②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업무 보조인력이 계속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 2022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후 운영 	<p>②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업무 보조인력이 계속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 2023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후 운영 	<p>■ 연도 현행화</p>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인력 계약체결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보건소, 병원 등 발급 기관에 관계없이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가능(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 ※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국민건강검진결과서’ 가능(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채용신체검사서 병력 요건 확인 필요)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회신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 을 통해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인력 계약체결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흉부 X-ray 포함](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건강검진대체통보서도 가능하나,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p>■ 개인위탁 강사 구비 서류와 동일 적용</p>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계약서 2부 	<p>※ 동의서는 계약 전에 미리 구비해야 하고 회신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www.share.go.kr)을 통해 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계약서 2부 	
113	<p>□ 고용보험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적용 제외이나,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3조」 (2018. 7. 3.) 개정 반영</p>	<p>□ 고용보험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적용 제외이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3조」 (2018. 7. 3.) 개정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순화
116	<p><신설> (4) 정산 (5) 소득공제</p>	<p>(4) 방과후학교 강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p> <p>※ 고용보험은 관련 법령과 관련 부서의 고시 및 지침에 따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과태료 부과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5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div> <p>(5) 정산 (6)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관련 법령 근거와 관련 부서의 고시 및 지침 내용을 현행화하여 추가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117	<소득공제 관련 법령>	<소득공제 관련 법령>	■ 관련 법령을 현행화함																		
119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적용 관련 안내자료 (근로복지공단, 2021.11.29.) <신설>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적용 관련 안내자료 (근로복지공단, 2022.7.14.) □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과 관련한 제도 변경 사항 안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3">제도 변경사항</th> </tr> <tr> <th>구 분</th> <th>2022. 6. 30.이전</th> <th>2022. 7. 1.이후</th> </tr> </thead> <tbody> <tr> <td>고용보험 요율 (실업급여)</td> <td>14/1,000</td> <td>16/1,000</td> </tr> <tr> <td>사업주(종사자) 부담분</td> <td>각 0.7%</td> <td>각 0.8%</td> </tr> <tr> <td>공제율</td> <td>18.4</td> <td>23.5</td> </tr> <tr> <td>과태료</td> <td>면제</td> <td>미신고 1명당 3만원(최대 100만원) 거짓신고 1명당 5~8만원 (최대300만원)</td> </tr> </tbody> </table> □ (유의사항) 2022.7.1.이후 발생하는 월보수부터 변경된 요율·공제율이 적용되며, 2022.6.30.이전으로 소급 또는 변경 신고하는 경우 종전 요율 및 공제율 적용 (예, 2022.6월 월보수액통보는 7.30.신고 기한이므로 기존 요율·공제율 적용) ※ 과태료 부과관련 세부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제도 변경사항			구 분	2022. 6. 30.이전	2022. 7. 1.이후	고용보험 요율 (실업급여)	14/1,000	16/1,000	사업주(종사자) 부담분	각 0.7%	각 0.8%	공제율	18.4	23.5	과태료	면제	미신고 1명당 3만원(최대 100만원) 거짓신고 1명당 5~8만원 (최대300만원)	■ 강사 고용보험 관련 제도 변경사항 현행화
제도 변경사항																					
구 분	2022. 6. 30.이전	2022. 7. 1.이후																			
고용보험 요율 (실업급여)	14/1,000	16/1,000																			
사업주(종사자) 부담분	각 0.7%	각 0.8%																			
공제율	18.4	23.5																			
과태료	면제	미신고 1명당 3만원(최대 100만원) 거짓신고 1명당 5~8만원 (최대300만원)																			
120	□ 방과후학교 강사 판단 ① 따라서 운영주체가 지자체인 경우는 제외(타만, 도 봉구청의 경우 학교가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로 방과후학교 강사로 인정)	□ 방과후학교 강사 판단 ① 운영주체가 지자체인 경우는 제외	■ 타시도 일반 사례 삭제																		
121	☞ 보험료 부과 납부 → 최초 납부기한은 2022.03.10.	<삭제>	■ 2022년부터는 고용보험 매월 보험료 부과·납부이므로 관련 내용 삭제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 2022.02.15. 일괄 보험료 구축 예정(보험가입 자별 보험료 산정 대상 여부 확인 후 일괄 구축 예정)</p> <p>※ 2021.7~12월 보험료에 대하여만 2022.03.10. 납부이며, 2022년부터는 매월 보험료 부과 납부</p>		

부록1 - 1. 서식(예시)

133	<p>서식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예비조사 및 참여 신청 안내</p> <p>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예비조사 및 참여 신청 안내</p> <p>학부모님께 우리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특기 계발과 실력 향상은 물론 학부모님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희망 프로그램을 아래 양식에 표시하여 ○○월 ○○일()까지 학생 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희망 학생 수를 참고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프로그램은 추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간(총 예정시간): ○○월 ○○일 - ○○월 ○○일 예정(○○시간) 2. 수강료 : 프로그램 신청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p> <p><신설></p>	<p>서식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예비조사 및 참여 신청 안내</p> <p>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예비조사 및 참여 신청 안내</p> <p>학부모님께 우리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과 실력 향상은 물론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희망 프로그램을 아래 양식에 표시하여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프로그램은 추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간(총 예정시간): ○○월 ○○일 - ○○월 ○○일 예정(○○시간) 2. 수강료 : 프로그램 신청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 3. 제출방법:</p>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필요시 작성) 20○○년 방과후학교 운영 방식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 ■ 13쪽, 55쪽 업체위탁 운영 여부조사(필요시) 내용 반영
-----	---	---	---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20○○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방식 중 희망하는 내용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p> <p>① 개인위탁 방식 () ② 업체위탁 방식 () ③ 개인위탁+업체위탁 ()</p> <p>- 개인위탁: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별 강사 모집 및 운영 - 업체위탁: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업체 선정, 업체에서 프로그램 운영</p>																					
136	<p>서식 3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안내</p>	<p>서식 3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안내</p> <p>□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추가함. 																				
139~145	<p>서식 5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개인위탁용)</p> <p>3.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p> <p>나. 세부 실천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248 847 884 970"> <thead> <tr> <th>실 천 내 용</th> <th>목 표</th> <th>시 기</th> <th>대 상</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학부모초청 프로그램 공개</td> <td>2회</td> <td>학기별 1회</td> <td>수강생, 학부모 교사</td> <td></td> </tr> </tbody> </table> <p>5. 강사 선정 심사 계획</p> <p>가. 평가위원</p> <p>1) (구성) 평가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p> <p>- 제안서 평가는 내부위원으로 구성 가능, 면접 심사는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p> <p>6. 교재 및 재료 선정 계획</p> <p>가. 교재(교구) 및 재료에 관한 내용은 제안서 평가 위원회에서 검토 한다.</p> <p>나. 프로그램별로 제출한 교재(교구) 및 재료 선정</p>	실 천 내 용	목 표	시 기	대 상	비 고	◦ 학부모초청 프로그램 공개	2회	학기별 1회	수강생, 학부모 교사		<p>서식 5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개인위탁용)</p> <p>3.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p> <p>나. 세부 실천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907 847 1543 970"> <thead> <tr> <th>실 천 내 용</th> <th>목 표</th> <th>시 기</th> <th>대 상</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학부모초청 프로그램 공개</td> <td>2회</td> <td>학기별 1회</td> <td>수강생, 학부모 교사</td> <td>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td> </tr> </tbody> </table> <p>5. 강사 선정 심사 계획</p> <p>가. 평가위원</p> <p>1) (구성) 평가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 (외부위원 50% 이상 참여)</p> <p>- 제안서 평가는 내부위원으로 구성 가능</p> <p>- 면접 심사는 외부위원 50% 이상 참석</p> <p>6. 교재 및 재료 선정 계획</p> <p>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에 따라 신고된 출판사의 도서 사용</p> <p>나. 교재(교구) 및 재료에 관한 내용은 교재(교구)선정</p>	실 천 내 용	목 표	시 기	대 상	비 고	◦ 학부모초청 프로그램 공개	2회	학기별 1회	수강생, 학부모 교사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초청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자율성 반영 ■ 평가위원 구성 및 면접심사 외부위원 참석 비율을 명확히 함 ■ 교재 및 재료 선정 계획 내용 현행화 ■ 수강료 금액 다양화 ■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 현행화함 ■ 자유수강권 사용범위 구체화
실 천 내 용	목 표	시 기	대 상	비 고																			
◦ 학부모초청 프로그램 공개	2회	학기별 1회	수강생, 학부모 교사																				
실 천 내 용	목 표	시 기	대 상	비 고																			
◦ 학부모초청 프로그램 공개	2회	학기별 1회	수강생, 학부모 교사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p> <p>나. 수강료 산출 기준(수용비가 강사료의 7%인 경우의 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253 387 880 683"> <thead> <tr> <th rowspan="2">순</th> <th rowspan="2">과목명</th> <th rowspan="2">인원 (예상)</th> <th colspan="3">1인당 예상 수강료 (※도서구입비와 재료구입비 미포함)</th> </tr> <tr> <th>강사료</th> <th>수용비</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1</td> <td>A프로그램</td> <td>80</td> <td>23,000원</td> <td>1,610원</td> <td>24,610원</td> </tr> <tr> <td>2</td> <td>B프로그램</td> <td>60</td> <td>28,000원</td> <td>1,960원</td> <td>29,960원</td> </tr> <tr> <td>3</td> <td>C프로그램</td> <td>60</td> <td>42,000원</td> <td>2,940원</td> <td>44,940원</td> </tr> <tr> <td>4</td> <td>D프로그램</td> <td>80</td> <td>55,000원</td> <td>3,850원</td> <td>58,850원</td> </tr> </tbody> </table> <p>마. 자유수강권 지원</p> <p>다) 지원 대상 및 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 보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00% 이하) - 3순위 : 학교장 추천 - 기타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p>사) 사용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참여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순	과목명	인원 (예상)	1인당 예상 수강료 (※도서구입비와 재료구입비 미포함)			강사료	수용비	계	1	A프로그램	80	23,000원	1,610원	24,610원	2	B프로그램	60	28,000원	1,960원	29,960원	3	C프로그램	60	42,000원	2,940원	44,940원	4	D프로그램	80	55,000원	3,850원	58,850원	<p>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p> <p>나. 수강료 산출 기준(수용비가 강사료의 7%인 경우의 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913 387 1541 683"> <thead> <tr> <th rowspan="2">순</th> <th rowspan="2">과목명</th> <th rowspan="2">인원 (예상)</th> <th colspan="3">1인당 예상 수강료 (※도서구입비와 재료구입비 미포함)</th> </tr> <tr> <th>강사료</th> <th>수용비</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1</td> <td>A프로그램</td> <td>60</td> <td>28,000원</td> <td>1,960원</td> <td>29,960원</td> </tr> <tr> <td>2</td> <td>B프로그램</td> <td>60</td> <td>32,000원</td> <td>2,240원</td> <td>34,240원</td> </tr> <tr> <td>3</td> <td>C프로그램</td> <td>60</td> <td>42,000원</td> <td>2,940원</td> <td>44,940원</td> </tr> <tr> <td>4</td> <td>D프로그램</td> <td>80</td> <td>55,000원</td> <td>3,850원</td> <td>58,850원</td> </tr> </tbody> </table> <p>마. 자유수강권 지원</p> <p>다) 지원 대상 및 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및 난민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피해자, 탈북기정학생) - 2순위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00% 이하) - 3순위 : 학교장 추천 - 기타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 <p>사) 사용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득이한 경우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급, 간식으로 지원 가능 	순	과목명	인원 (예상)	1인당 예상 수강료 (※도서구입비와 재료구입비 미포함)			강사료	수용비	계	1	A프로그램	60	28,000원	1,960원	29,960원	2	B프로그램	60	32,000원	2,240원	34,240원	3	C프로그램	60	42,000원	2,940원	44,940원	4	D프로그램	80	55,000원	3,850원	58,850원	
순	과목명				인원 (예상)	1인당 예상 수강료 (※도서구입비와 재료구입비 미포함)																																																															
		강사료	수용비	계																																																																	
1	A프로그램	80	23,000원	1,610원	24,610원																																																																
2	B프로그램	60	28,000원	1,960원	29,960원																																																																
3	C프로그램	60	42,000원	2,940원	44,940원																																																																
4	D프로그램	80	55,000원	3,850원	58,850원																																																																
순	과목명	인원 (예상)	1인당 예상 수강료 (※도서구입비와 재료구입비 미포함)																																																																		
			강사료	수용비	계																																																																
1	A프로그램	60	28,000원	1,960원	29,960원																																																																
2	B프로그램	60	32,000원	2,240원	34,240원																																																																
3	C프로그램	60	42,000원	2,940원	44,940원																																																																
4	D프로그램	80	55,000원	3,850원	58,850원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146~151	<p>서식 6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업체위탁용)</p> <p><강사로 산출 내역></p> <table border="1" data-bbox="248 384 887 679"> <thead> <tr> <th>인건비 비율(%)</th> <th>경비 비율(%)</th> <th>일반 관리비 비율(%)</th> <th>이윤 비율(%)</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40.005</td> <td>2,396</td> <td>2,544</td> <td>4,495</td> <td>49,440</td> </tr> <tr> <td>80.916</td> <td>5.9</td> <td>6</td> <td>10</td> <td></td> </tr> <tr> <td>26,954</td> <td>1,348</td> <td>1,698</td> <td>3,000</td> <td>33,000</td> </tr> <tr> <td>81.679</td> <td>5</td> <td>6</td> <td>10</td> <td></td> </tr> <tr> <td>29,404</td> <td>1,471</td> <td>1,853</td> <td>3,272</td> <td>36,000</td> </tr> <tr> <td>81.679</td> <td>5</td> <td>9</td> <td>10</td> <td></td> </tr> </tbody> </table> <p>① 평가위원 자격 및 구성인원 - 외부인원의 참여비율은 50%이상으로 구성한다.</p> <p>6. 회계관리 (환불규정) 수강료 환불 사유 발생시, 환불규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하도록 한다.</p>	인건비 비율(%)	경비 비율(%)	일반 관리비 비율(%)	이윤 비율(%)	계	40.005	2,396	2,544	4,495	49,440	80.916	5.9	6	10		26,954	1,348	1,698	3,000	33,000	81.679	5	6	10		29,404	1,471	1,853	3,272	36,000	81.679	5	9	10		<p>서식 6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업체위탁용)</p> <p><강사로 산출 내역></p> <table border="1" data-bbox="909 384 1541 679"> <thead> <tr> <th>인건비 비율(%)</th> <th>경비 비율(%)</th> <th>일반 관리비 비율(%)</th> <th>이윤 비율(%)</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39,552</td> <td>2,849</td> <td>2,544</td> <td>4,495</td> <td>49,440</td> </tr> <tr> <td>80</td> <td>7.2</td> <td>6</td> <td>10</td> <td></td> </tr> <tr> <td>26,730</td> <td>1,572</td> <td>1,698</td> <td>3,000</td> <td>33,000</td> </tr> <tr> <td>81</td> <td>5.88</td> <td>6</td> <td>10</td> <td></td> </tr> <tr> <td>29,160</td> <td>1,715</td> <td>1,852</td> <td>3,273</td> <td>36,000</td> </tr> <tr> <td>81</td> <td>5.88</td> <td>6</td> <td>10</td> <td></td> </tr> </tbody> </table> <p>① 평가위원 자격 및 구성인원 - 외부인원의 참여비율은 50%이상으로 구성하고 제안서 평가시 외부위원 50%이상 참석</p> <p>6. 회계관리 (환불규정) 수강료 환불 사유 발생시,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학교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p>	인건비 비율(%)	경비 비율(%)	일반 관리비 비율(%)	이윤 비율(%)	계	39,552	2,849	2,544	4,495	49,440	80	7.2	6	10		26,730	1,572	1,698	3,000	33,000	81	5.88	6	10		29,160	1,715	1,852	3,273	36,000	81	5.88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 안을 반영하여 예시를 추가함 - 자료 현행화, 인건비 비율 정수화 평가위원 구성 및 제안서 평가 외부위원 참석 비율을 명확히 함 개인위탁 서식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인건비 비율(%)	경비 비율(%)	일반 관리비 비율(%)	이윤 비율(%)	계																																																																					
40.005	2,396	2,544	4,495	49,440																																																																					
80.916	5.9	6	10																																																																						
26,954	1,348	1,698	3,000	33,000																																																																					
81.679	5	6	10																																																																						
29,404	1,471	1,853	3,272	36,000																																																																					
81.679	5	9	10																																																																						
인건비 비율(%)	경비 비율(%)	일반 관리비 비율(%)	이윤 비율(%)	계																																																																					
39,552	2,849	2,544	4,495	49,440																																																																					
80	7.2	6	10																																																																						
26,730	1,572	1,698	3,000	33,000																																																																					
81	5.88	6	10																																																																						
29,160	1,715	1,852	3,273	36,000																																																																					
81	5.88	6	10																																																																						
152	<p>서식 7 방과후학교 운영 기록물 보존 기간</p> <table border="1" data-bbox="248 1094 846 1390"> <thead> <tr> <th>보존 기간</th> <th>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5년</td> <td><신설></td> </tr> </tbody> </table>	보존 기간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5년	<신설>	<p>서식 7 방과후학교 운영 기록물 보존 기간</p> <table border="1" data-bbox="909 1094 1541 1390"> <thead> <tr> <th>보존 기간</th> <th>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5년</td> <td>4. 토지수용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록물 중 3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5.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6.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낮으나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td> </tr> </tbody> </table>	보존 기간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5년	4. 토지수용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록물 중 3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5.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6.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낮으나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학교 운영 중 발생하는 기록물 현행화함. 																																																														
보존 기간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5년	<신설>																																																																								
보존 기간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5년	4. 토지수용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록물 중 3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5.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6.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낮으나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table border="1"> <tr> <td>보존 기간</td> <td>...</td> <td>방과후학교 기록물 보존기간</td> </tr> </table>	보존 기간	...	방과후학교 기록물 보존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교육활동(단위과제카드)-(연간)운영계획, 세부운영계획, 방학중운영계획, 심사표,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협의록 등 포함(2) · 계약서 관련 서류(2) · 출석부, 출근부, 결보강일지, 프로그램운영일지(2) · 자유수강권 관련 서류(2) 	<table border="1"> <tr> <td>보존 기간</td> <td>...</td> <td>방과후학교 기록물 보존기간</td> </tr> </table>	보존 기간	...	방과후학교 기록물 보존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교육활동(단위과제카드)-(연간)운영계획, 세부운영계획, 방학중운영계획, 심사표,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협의록 등 포함(2) · 계약서 관련 서류(2) · 출석부, 출근부, 결보강일지, 프로그램운영일지(2) · 자유수강권 관련 서류(2) 	
보존 기간	...	방과후학교 기록물 보존기간											
보존 기간	...	방과후학교 기록물 보존기간											
153	<p>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1.5.][대통령령 제25693호, 2014.11.4., 일부 개정]</p> <p>제26조(보존기간)</p> <p>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단위과제별로 책정한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위과제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4.></p> <p>③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개정 2010.5.4.></p>			<p>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1.5.][대통령령 제25693호, 2014.11.4., 일부 개정]</p> <p>제26조(보존기간)</p> <p>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단위과제별로 책정한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위과제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4.></p> <p>③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개정 2010.5.4.></p>			<p>■ 관계법령 현행화</p>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169	<p>서식 21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p> <p>라. 선정 및 계약방법: 1차 제안서 평가 합격자에 한해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를 선정</p>	<p>서식 21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p> <p>라. 선정 및 계약방법: 1차 제안서 평가 합격자에 한해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를 선정 (※서류심사 합격자가 포기시 차순위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예정자 선정 방법 구체화 																																		
170~172	<p>서식 2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p> <table border="1" data-bbox="248 611 875 676"> <tr> <td>자격 및 면허</td> <td>취득년월일</td> <td>자격·면허명</td> <td>수여기관</td> <td>비고</td> </tr> </table> <p>2.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②쪽</p> <table border="1" data-bbox="248 679 875 995"> <thead> <tr> <th rowspan="4">운영</th> <th colspan="2">수강료(월간)</th> <th rowspan="4">교재</th> <th rowspan="4">교재명 (출판사)</th> <th rowspan="4">예정가격*</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희망요일</td> </tr> <tr> <td>운영시간</td> <td>주당 차시</td> </tr> <tr> <td>재료비(예정)액</td> <td>원*</td> </tr> </tbody> </table> <p>* 예정가격은 학생이 부담하게 되는 교재의 최고액</p>	자격 및 면허	취득년월일	자격·면허명	수여기관	비고	운영	수강료(월간)		교재	교재명 (출판사)	예정가격*	희망요일		운영시간	주당 차시	재료비(예정)액	원*	<p>서식 2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p> <table border="1" data-bbox="907 611 1534 703"> <tr> <td>자격 및 면허</td> <td>취득년월일</td> <td>자격·면허명</td> <td>자격관리 기관</td> <td>등록번호</td> </tr> </table> <p>2.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②쪽</p> <table border="1" data-bbox="907 707 1534 1023"> <thead> <tr> <th rowspan="4">운영</th> <th colspan="2">강사료(월간)</th> <th rowspan="4">교재</th> <th rowspan="4">교재명 (출판사)</th> <th rowspan="4">예정가격*</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희망요일</td> </tr> <tr> <td>운영시간</td> <td>주당 차시</td> </tr> <tr> <td>재료비(예정)액</td> <td>원*</td> </tr> </tbody> </table> <p>* 예정가격은 학생이 부담하게 되는 교재의 최고액</p> <p>※ 출판문산업진흥법에 따라 저자, 발행일, 출판사, ISBN이 기재된 도서와 출판사 검색시스템 (https://book.mcst.go.kr)에 등록된 도서</p>	자격 및 면허	취득년월일	자격·면허명	자격관리 기관	등록번호	운영	강사료(월간)		교재	교재명 (출판사)	예정가격*	희망요일		운영시간	주당 차시	재료비(예정)액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자격검색 항목 반영 ■ 용어 수정 및 제안서 구체화
자격 및 면허	취득년월일	자격·면허명	수여기관	비고																																	
운영	수강료(월간)		교재	교재명 (출판사)	예정가격*																																
	희망요일																																				
	운영시간	주당 차시																																			
	재료비(예정)액	원*																																			
자격 및 면허	취득년월일	자격·면허명	자격관리 기관	등록번호																																	
운영	강사료(월간)		교재	교재명 (출판사)	예정가격*																																
	희망요일																																				
	운영시간	주당 차시																																			
	재료비(예정)액	원*																																			
180~181	<p>서식 29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p>	<p>서식 29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p> <p><세부 내용 현행화 교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서식을 현행화함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183	서식 3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 3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서식을 현행화함
184	서식 3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서식 3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서식을 현행화함
187	서식 3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대체강사 활용 요청서 방과후학교 ()부 대체강사 활용 요청서 1. 관련근거 : 위·수탁 계약사항 ()조 ()항 2. 요청내용 3. 대체기간 4. 대체강사 인적사항 5. 동의사항 6. 첨부서류 1.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2. 채용신체검사서 3.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	서식 3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대체강사 활용 요청서 방과후학교 ()부 대체강사 활용 요청서 1. 관련근거 : 위·수탁 계약사항 ()조 ()항 1. 요청내용 2. 대체기간 3. 대체강사 인적사항 4. 동의사항 5. 첨부서류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②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③ 채용신체검사서 ④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2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서(개인위탁)에 관련근거 내용없어 삭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가
188 ~ 197	서식 36 입찰 공고문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서식 36 입찰 공고문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교육부 사항 동일하게 반영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p> <p>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p> <p>【2단계】 2. 입찰방법 <신설></p> <p>【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방법</p>	<p>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p> <p>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p> <p>【2단계】 2. 입찰방법 라. 본 영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간 제한입찰이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하여 비영리법인의 참가가 가능합니다.</p> <p>[수기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1) 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는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3) 만약,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가격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p>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전자 제출]</p> <p>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로 집행합니다.</p> <p>1)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은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p> <p>2) 가격입찰서 제출은 G2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p> <p>3) 만약,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가격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p> <p>나. 본 입찰은 ○○입찰, 지역제한 입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p> <p>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간 제한입찰이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의 예외를 적용하여 비영리법인의 참가가 가능합니다.(※다 항목은 추정가격 2.1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을 하지 않는 경우 경우 삭제)</p> <p>【협상에 의한 계약】</p> <p>2. 입찰방법</p> <p>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 제1호에 따른 소기업</p>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간 제한입찰이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하여 비영리법인의 참가가 가능합니다.</p> <p>【공통】 3. 입찰참가자격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의 경우]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p> <p>① 방과후학교 또는 교육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자</p> <p>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시·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p> <p>③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u>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u></p> <p>2) 비영리법인(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에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이</p>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허가증,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p> <p>[중소기업자 간 제한의 경우]</p> <p>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p> <p>① 방과후학교 또는 교육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자</p> <p>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p> <p>③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p> <p>2) 비영리법인(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에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허가증,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p>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p> <p>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 이 적용 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p> <p>※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p> <p>[추정가격 2.1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자 간 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p> <p>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p> <p>① 방과후학교 또는 교육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p>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공통】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4) 제출서류 아)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신설></p>	<p>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p> <p>【공통】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아) 등기사항증명서(법인) 1부</p> <p>[수기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기 간: 20○○. . . () 00:00 ~ 20○○. . . () 00:00 (기간 및 시간엄수) 2) 접수장소: 본교 행정실 3)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 하여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청렴서약서 1부 다) 제안서 0부 ※ 제안서에 교재·교구 활용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교재의 경우에는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을 포함하고, 교구의 경우에는 품명, 규격, 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라)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해당되는 경우만</p>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마)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1부 및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시</p> <p>바)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p> <p>사) 사용인장계 1부</p> <p>아) 등기사항증명서(법인) 1부</p> <p>5) 유의사항</p> <p>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p> <p>나)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p> <p>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1장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만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p> <p>[전자제출]</p> <p>가. 제안서 제출</p> <p>1) 제출기간: 2000. . . () 00:00 ~ 2000. .</p>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 00:00</p> <p>2) 제출장소: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p> <p>3)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전자제출)</p> <p>4) 제출서류: 전체 300MB 미만, 정량제안서, 정성 제안서, 기타입찰서류 구분</p> <p>※ 제안서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p> <p>○ 정량제안서: 【붙임 ○】 제안요청서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 방과후학교 운영 위탁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붙임 3】 제안요청서 참조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서로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1부. - 인건비 지급 이행 약속서 1부. <p>○ 정성제안서: 【붙임 ○】 제안요청서, 【붙임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정성제안서에 교재·교구 활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교구 활용 계획서에 교재의 경우에는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을 포함하고, 교구의 경우에는 품명, 규격, 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div> <p>○ 기타제출서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기타제출서류는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div> <p>-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비영리법인 제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개인) 각 1부. → 비영리법인: 법인허가증,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 기타 서류</p> <p>→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장계 포함) 1부.</p> <p>→ 각서【붙임 ○】 1부.</p> <p>→ 청렴서약서【붙임 ○】 1부.</p> <p>→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 1부.</p> <p>※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을 증명하는 문구, 상호 등을 기재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p> <p>5) 제안서 제출방법 상세 안내</p> <p>① 이 입찰은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 및 규격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유효합니다.</p> <p>②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 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p> <p>※ 제안서 등의 온라인 제출에 대한 상세안내는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134, 6118, 6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③ 제안서 제출화면의 ‘임시저장’ 은 제출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안서를 임시저장하고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p>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④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913 400 1541 552"> <tr> <td data-bbox="920 405 1021 547">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td> <td data-bbox="1021 405 1534 547">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td> </tr> </table> <p>⑤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913 722 1541 1273"> <tr> <td data-bbox="920 727 1534 1268"> <p style="text-align: center;"><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u>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u> * <u>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것도 포함)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u>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p>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2) 제출방법 및 장소: G2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p> </td> </tr> </table>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p style="text-align: center;"><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u>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u> * <u>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것도 포함)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u>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p>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2) 제출방법 및 장소: G2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p>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p style="text-align: center;"><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u>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u> * <u>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것도 포함)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u>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p>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2) 제출방법 및 장소: G2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p>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199	<p>서식 37 방과후학교(전부/일부)운영 계약 특 수조건(업체위탁용)</p> <p>제7조 (강사선임 및 관리)</p> <p>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강사를 선임할 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강사를 최초 선임 또는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인적 사항과 관련 서류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치해야 한다.</p> <p>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학부모의 요구 및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사교체를 요구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한다.</p>	<p>서식 37 방과후학교(전부/일부)운영 계약 특 수조건(업체위탁용)</p> <p>제7조 (강사선임 및 관리)</p> <p>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강사를 선임할 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강사를 최초 선임 또는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인적 사항과 관련 서류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조치해야 한다.</p> <p>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학부모의 요구 및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사교체를 요구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흐름 상 오타 수정
204-205	<p>서식 39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p> <p>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p> <p>○○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 “갑” 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 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p> <p>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표준 개인</p>	<p>서식 39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p> <p>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p> <p>○○학교장(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수탁자” 이라 한다)는 “위탁자” 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 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p> <p>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 을 “위탁자”, “을” 을 “수탁자” 로 수정 ■ 개정된 법령 반영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p> <p>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p> <p>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신설> 제10조(손해배상)</p>	<p>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p> <p>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p> <p>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p> <p>제11조(손해배상)</p>	
209	<p>서식 40 과업내용서</p>	<p>서식 40 과업내용서</p>	<p>■ 대금지급시 청구 서류 예시 안내</p>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라. 대가지급</p> <p>1)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기성대가 지급을 발주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p> <p>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 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p>	<p>라. 대가지급</p> <p>1)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기성대가 지급을 발주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p> <p>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 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p> <p>3) 대금지급시 청구 서류(예시): 교육비청구내역, 이체결과확인증, 인건비지급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p>																									
212	<p>서식 41 제안요청서</p> <hr/> <p>* 신용정보업체 자료</p> <table border="1" data-bbox="257 820 504 1260"> <tr><th>신용평가기관</th></tr> <tr><td>나이스디앤비(주)</td></tr> <tr><td>NICE평가정보(주)</td></tr> <tr><td>에스씨아이평가정보(주)</td></tr> <tr><td>한국기업데이터</td></tr> <tr><td>한국기업평가</td></tr> <tr><td>한국신용평가</td></tr> <tr><td>NICE신용평가(주)</td></tr> <tr><td>이크레더블</td></tr> <tr><td>SCR서울신용평가(주)</td></tr> </table> <p>2) 정성평가 부분</p> <table border="1" data-bbox="257 1316 873 1412"> <tr> <td>4. 관리 영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행정 업무 지원(코디네이터 등) 및 소통계획 기술 ○ 기타 필요사항 기술 </td> </tr> </table>	신용평가기관	나이스디앤비(주)	NICE평가정보(주)	에스씨아이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R서울신용평가(주)	4. 관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행정 업무 지원(코디네이터 등) 및 소통계획 기술 ○ 기타 필요사항 기술 	<p>서식 41 제안요청서</p> <hr/> <p>* 신용정보업체 자료</p> <table border="1" data-bbox="916 828 1162 1257"> <tr><th>신용평가기관</th></tr> <tr><td>나이스디앤비</td></tr> <tr><td>나이스평가정보(주)</td></tr> <tr><td>에스씨아이평가정보</td></tr> <tr><td>한국기업데이터</td></tr> <tr><td>한국기업평가</td></tr> <tr><td>한국신용평가</td></tr> <tr><td>나이스신용평가(주)</td></tr> <tr><td>(주)이크레더블</td></tr> <tr><td>서울신용평가(주)</td></tr> </table> <p>2) 정성평가 부분</p> <table border="1" data-bbox="916 1313 1538 1409"> <tr> <td>4. 관리 영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행정 업무 지원방법 기술 ○ 기타 필요사항 기술 </td> </tr> </table>	신용평가기관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에스씨아이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주)	4. 관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행정 업무 지원방법 기술 ○ 기타 필요사항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기관 명칭 변경 내용 반영 ■ 보조인력의 통칭어로 용어 및 내용 반영
신용평가기관																											
나이스디앤비(주)																											
NICE평가정보(주)																											
에스씨아이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R서울신용평가(주)																											
4. 관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행정 업무 지원(코디네이터 등) 및 소통계획 기술 ○ 기타 필요사항 기술 																										
신용평가기관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에스씨아이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주)																											
4. 관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행정 업무 지원방법 기술 ○ 기타 필요사항 기술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235	<p>서식 58 산출내역서</p> <table border="1" data-bbox="255 416 517 660"> <tr><td>2. 경비</td></tr> <tr><td>o 유인물비 (자료복사비) (인쇄비)</td></tr> <tr><td>o 강사 연수비</td></tr> <tr><td>o 회의실 임차료</td></tr> <tr><td><신설></td></tr> </table>	2. 경비	o 유인물비 (자료복사비) (인쇄비)	o 강사 연수비	o 회의실 임차료	<신설>	<p>서식 58 산출내역서</p> <table border="1" data-bbox="913 416 1176 679"> <tr><td>2. 경비</td></tr> <tr><td>o 유인물비 (자료복사비) (인쇄비)</td></tr> <tr><td>o 강사 연수비</td></tr> <tr><td>o 회의실 임차료</td></tr> <tr><td>o 고용보험료</td></tr> </table>	2. 경비	o 유인물비 (자료복사비) (인쇄비)	o 강사 연수비	o 회의실 임차료	o 고용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강사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반영
2. 경비													
o 유인물비 (자료복사비) (인쇄비)													
o 강사 연수비													
o 회의실 임차료													
<신설>													
2. 경비													
o 유인물비 (자료복사비) (인쇄비)													
o 강사 연수비													
o 회의실 임차료													
o 고용보험료													
242	<p>서식 63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만족도 설문지(학생용)</p> <p>5.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7.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p>	<p>서식 63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만족도 설문지(학생용)</p> <p>5.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7.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의 판단 영역이 아니므로 삭제함 										
244	<p><신설></p>	<p>서식 6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법령 현행화에 따른 서식 추가 										
부록 2. Q&A													
250	<p>Q 5: 방과후학교 교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방과후학교교재는 프로그램별로 수준에 따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부교재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야 합니다.</p>	<p>Q 5: 방과후학교 교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방과후학교교재는 프로그램별로 수준에 따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부교재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교재(교구)선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재교구선정위원회 추가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255	<p>Q 25: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저소득 근로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학교에 고용임금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발급이 가능한가요?</p>	<p>Q 25: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저소득 근로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학교에 고용임금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발급이 가능한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변경됨
255	<p>Q 27: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A: 모든 계약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p>	<p>Q 27: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A: 모든 계약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계약 금액 법령에 맞게 수정
260	<p>Q 43: 국세 납세사실증명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는 무엇이며, 어느 기관에서 발급하나요? A: 발급기관은 국세는 전국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국세일 경우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지방세일 경우 위텍스(www.wetax.go.kr)에서 또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p>	<p>Q 43: 국세 납세사실증명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는 무엇이며, 어느 기관에서 발급하나요? A: 발급기관은 국세는 전국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국세일 경우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지방세일 경우 위텍스(www.wetax.go.kr)에서 또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정부24(www.gov.kr)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발급 주소 현행화
263	<p>Q52: 방과후학교 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후 업체에서 선금지급을 요구하는데 선금지급이 가능한가요? A: 다만,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금지급의 예외사항이 되며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특성상 선금지급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p>	<p>Q52: 방과후학교 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후 업체에서 선금지급을 요구하는데 선금지급이 가능한가요? A: 다만,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금지급의 예외사항이 되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특성상 선금지급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된 부처명 반영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263	<p>Q53: 업체에 방과후학교 용역 기성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대가 지급기한은 어느 정도인가요?</p> <p>A: 대가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학생·학부모로부터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시 선수납을 원칙으로 하여 대가 지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p>-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p> <p>※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p>	<p>Q53: 업체에 방과후학교 용역 기성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대가 지급기한은 어느 정도인가요?</p> <p>A: 대가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학생·학부모로부터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시 선수납을 원칙으로 하여 대가 지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p>-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p> <p>※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법령 반영
263	<p>Q54: 인건비 지급률을 월별로 확인할 때 강사의 보험료(사업주부담 보험료), 퇴직총당금을 포함해도 되나요?</p> <p>A: 기강사 인건비는 강사 등에 대한 급료(본인부담 보험료 포함)와 퇴직총당금이 포함되고, 사업주부담 보험료는 경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p> <p>※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9.)</p>	<p>Q54: 인건비 지급률을 월별로 확인할 때 강사의 보험료(사업주부담 보험료), 퇴직총당금을 포함해도 되나요?</p> <p>A: 기강사 인건비는 강사 등에 대한 급료(본인부담 보험료 포함)와 퇴직총당금이 포함되고, 사업주부담 보험료는 경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p> <p>※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 1.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법령 반영
264	<p><신설></p>	<p>Q58: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p> <p>A: 고용보험료는 모든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해당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p> <p>1) 적용범위:</p> <p>① 방과후학교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운영재원의 출처와 무관함</p> <p>② 방과후학교 강사, 돌봄 연계 방과후학교 강사, 토요일방과후학교 강사</p> <p>2) 보험관계성립신고: 노무제공개시일 14일 이내 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을 반영함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근거 및 사유)
		<p>협관계성립신고서 제출(최초 1회)</p> <p>3) 취득신고: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최초 1회)</p> <p>4) 월보수액* 통보: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반드시 통보</p> <p>*월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p> <p>※ 피보험자격 상실: 사업주별** 합산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p> <p>**사업주: 국공립학교☞교육감, 사립학교☞재단이사장</p> <p>(주의) 신고대상 판단은 각급 학교단위가 아닌 보험가입자 단위로 판단</p> <p>※ 방과후학교 강사가 복수의 공립학교에 출강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의 공립학교에서 신고한 월보수액을 합산*→보험료 산정→고지서를 발부함</p> <p>*월보수액 합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방과후학교 강사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합산 신청해야 함</p> <p>5) 보험료율(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와 방과후학교 강사가 각각 0.8%씩 균등 부담 - 방과후학교 강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원천공제하여 납부 <p>6) 보험료 부과 하한 기준보수: 월보수가 133만원 미만인 경우 133만원으로 산정</p> <p>※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대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p>	